

답변서

질의일시 : '95. 12. 11 행정사무감사 특위

질의자 : 김영식 위원

답변자 : 부군수

질의제목 :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군의회 협의 처리

질의요지

-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군의회에 협의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 인·허가 업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도달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사무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개별 법령등에 명시하고
-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민원은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매년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총무처장관이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종류를 정하며,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저희 군에 접수된 민원은 11월말 현재 13,130건이 접수되어 12,849건이 처리되었으며 불가, 반려 민원이 144건, 처리중인 민원은 137건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1일 접수 건수가 48건으로 대단히 많으며

-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과 규정, 지침,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 배부한 민원 심사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므로 민원 공무원의 사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없으며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경우에 민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어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민원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협의후 처리는 불가하며
- 다만 다수 주민의 공익,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특정사항,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 다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주민에게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의회협의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 12월 12일

달성군 부군수 이 원 팔